

담배산업의 환경변화와 품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 근 회

한국인삼연초연구원 분석부

지난 20년간의 담배산업은 다른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격변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동안 담배제조회사들은 인수합병과 동시에 관련 제조 속도를 배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4000본/분에서 9000~16000본/분으로 고속화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자동화 장치를 개발하여 원가절감과 불량율을 감소시켜 왔다.

연대별 변화내역을 보면 1980년대에 담배에 대한 유해성과 각종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담배산업의 사양화를 예측하여 사업다각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선진다국적 기업에서 자국내의 소비 감소 분 보전을 위하여 러시아, 동유럽 및 일본 등 아시아 제국의 시장개방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으며, 1990년대 후반은 JT의 RJR Int., BAT의 Rothmans인수가 이루어졌으며 Seita와 Tabacalea를 합병하여 Altadis사를 설립하는 등 인수합병의 시기였고, 시장 점유율도 BAT 25%, PM 22% JT 14%로 PM이 BAT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와 같은 집중화와 국제화가 지속될 예상이며, 각종 규제와 소비자 요구에 따라 Safer담배 개발이 작금의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예측된다.

유럽에서도 규제 강화와 세금인상으로 밀수 등 불법거래와 RYO (Rolling Your Own) 담배가 증가되고 있으며, 심화되어 가는 각종 규제와 일부국가의 소비감

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담배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중남미와 아시아 시장, 장기적으로는 동유럽과 러시아 시장의 잠재력과 담배유통의 현금유동성과 수익성 때문에 2~3%증가될 것으로 맥스웰레포트는 예상하고 있다.

담배 산업의 부정적 측면은 NGO의 금연운동, 흡연피해소송과 WHO의 담배규제기본 협약, 제조물 책임법(PL)등이다. 2003년 협약할 예정인 WHO의 논의 내용을 보면 가격과 세금, 밀수, 면세담배의 유통제한, 광고 및 후원금, 성분의 시험 및 보고, 갑포장과 경고문구표기, 정보공유, 농업정책(대체작물포함)과 여성 및 청소년 흡연에 관한 사항이다.

1963년부터 미국 일부 주정부에서 판례에 따른 제조물 책임에 대한 법리가 설정되었으며 제조자의 과실책임, 보증책임, 업체 책임으로 발전하여 197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채택했고 1985년에는 EC지침을 따르게 되었다.

PL법의 EC지침내용은 제조물의 결함, 1차 원료(농·수·축산물)제외, 책임주체는 완성품제조업체, 원재료 및 부품제조업체, 수입업체 포함,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입증, 제조물의 표기, 사용, 유통시기 등을 결함으로 인정, 손해배상의 범위 등이다. 국내의 경우 PL법이 입법예고 되어있고 2001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PL법이 시행되면 성분과 유통기한의 표기가 의무화되며 정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1980년 환경경영체제 출범으로 OECD와 국제 환경기구에서는 쾌적한 삶 영위와 지구환경 파괴 방지를 위해 대기, 수질, 소음은 물론 난분해성 재료의 사용과 발생되는 환경관련성분의 규제가 예상된다.

위에 제시된 여려 규제들은 국내에 필연적으로다가 올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원료의 생산, 가공과 제품 설계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국내 제조담배의 이화학성 변동을 보면 공기 흡석률 3~9%, 타르 5~11%, 각초의 니코틴 8~14%로 품질변동이 매우 큰 편이다.

PL법에 의거 표시품질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는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품질관리체계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단기적 대응으로는 원료의 사용을 현 다품종, 다풍급 체계를 균질화 차원으로 사용법의 변경이 요구되면 제조공장 및 권상기 종류별로 단일제품 생산체계를 도입해 제고공장이나 권상 기종에 따른 편차를 축소하고 통계적 공정관리(SPC)시스템의 적용과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원료의 생산, 가공공정, 담배제조공정의 효율화 와 사용재료품의 지속적인 품질편차 축소노력이 요구된다.

WHO등의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성분들에 대한 국내외 현황검토와 대응방안을 PL법 대비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추진해야되며 또한 담배관련 국제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급격한 변화추이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